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279호

의 안 명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대상기관 81개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1. 5. 10.

주 문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81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5월 10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이정희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응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옥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별지]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부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2021. 5.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목 차

I. 추진 배경

-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각 지자체는 ‘화장(火葬)’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개념)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화장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등을 위해 화장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지급액) 10만원~100만원까지 정액 지급하거나, 비용의 일부(예:50%)를 정률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급액·지급방식 상이

- 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불명확한 절차로 인해 유족 고충이 유발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 상당수 지자체가 기존의 분묘를 없애는 ‘개장(改葬) 화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도 도입취지 반감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자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분묘를 감소시킴으로써 장려금 제도 취지에 부합

- 사망자의 주소가 해당 지자체 ‘관내’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족(신청자)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하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 초래

※ 현재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인 81개 지자체 중 2개 지자체(2.4%)만이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

- 유족이 지켜야 할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은 엄격히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자 권리 보호 미흡

-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 화장장려금이 당초 취지대로 지급·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II. 제도 현황

□ 일반 현황

- (필요성) 지자체의 신규 화장시설 설치에 막대한 건설비용 부담,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 곤란

해당 지자체 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경우, 멀리 떨어진 관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외에 많은 비용(예 : 관내 10만원, 관외 100만원)까지 들어 주민 부담으로 작용

이러한 주민 불편·부담의 경감, 묘지로 인한 국토훼손 방지,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높은 화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

- (지급 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자체 관련 조례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 장려 시책의 시행은 국가·지자체의 ‘의무’ 사항

- (운영 기관) '99년 '영모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이래, 현재는 총 81개 지자체(시·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 '18년 2개, '19년 3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을 새로 시작(조례 제정)하는 등 최근까지도 관련 제도 신설이 이어지고 있음

1)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지급 제외 사유, 지급액, 신청절차, 환수 등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화장장려금 지급 지자체 현황>

(단위 : 개)

연번	시·도	시·군·구
1	경기(18)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2	인천(2)	옹진군, 남동구
3	강원(8)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4	충남(4)	계룡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5	충북(7)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6	전남(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7	전북(8)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8	경남(9)	거제시, 거창군,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9	경북(12)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청도군, 청송군, 철곡군

- (기타 지원 방식) 위와 같이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 관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 또는 인근 주민*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

* 인접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공동화장장 설치를 통해 관내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사용료 혜택** 제공(원주화장장 : 원주, 횡성, 여주 주민 공동 이용, 공주화장장 : 공주, 부여, 청양 주민 공동 이용 등)

<지원 방식별 지자체 현황>

(단위 : 개)

지원방식	합계	장려금 지급	화장장 설치 및 사용료 혜택	해당 없음*
지자체(기초)	226	81	137	8

* 대부분 현재 광역 공동화장장 건립을 추진(시흥, 화성, 광명, 포천 등) 중이거나, 최근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조례를 폐지(울진, 의정부 등)

□ 제도 운영 현황

- **(지급 대상)** 관내(사망자 기준) 화장시설이 없거나 관내 시설 사용이 불가하여 **관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그 유족에게 화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사망 당시 주소(관내)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사망 전부터 **‘일정기간(3개월~1년) 이상 거주’를 지급 요건**으로 하는 등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지자체도 존재

※ 전체의 33.3%(27/81)는 사망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66.6%(54/81)는 사망 전부터 일정 기간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장려금 지급

- **(지급액)** 조례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실제 화장시설 사용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 **지원액,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

<화장장려금 지급액·지급방식 현황(조례 규정)>

(단위 : 만원 / %)

화 장 장려금	정액 방식(59.3%, 48/81)					정률 방식(40.7%, 33/81)					
	지급액					이용료 기준				관내·관외 차액 ²⁾ 기준	
	10	20 ~30	40 ~50	60	100	30%	50~ 60%	70~ 80%	100%	50%	100%
지자체 (수)	3개	29개	12개	1개	3개	1개	10개	4개	5개	6개	7개

※ 정률방식보다는 정액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원 금액 규모는 건당 20만원~5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85.4%로 대부분을 차지

2) 일반적으로 관내 대비 관외 사망자에 대하여 높은 화장비용(보통 10배 내외)을 징수,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려금으로 환전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2017~2019)>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증감율
지자체 수	73개	76개	80개	8.8% 증
지급대상자 수	25,457명	27,531명	27,880명	8.7% 증
지급액	8,630	9,262	9,417	8.4% 증

※ 화장장려금 지급규모는 완만한 증가세, '19년 기관당 평균 지급액 1억2천만원 수준, 기관별 최대 17억8천만 원(○○시) vs 최소 64만 원(○○구)으로 지자체 별로 큰 편차

- **(지급 기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급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 미비

※ 전체의 25.9%(21/81)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조례상 지급기한 미규정

Ⅲ. 문제점

1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 제한

(1) 개장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한

- 사망 후 최초로 화장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이하 “개장”)하는 경우도 ‘국토 훼손 방지’라는 화장장려금 제도 목적에 부합

※ 화장은 묘지의 ‘증가 억제’라는 소극적 한계가 있는데 반해, 개장의 경우는 기존 묘지 면적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

-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개장의 경우까지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 아직까지 상당수 지자체가 개장의 경우를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유발되고 당초 제도 도입 취지 훼손

<화장장려금 지급 현황(2017~2019)>

구분	화 장		개 장	
	지급	불지급	지급	불지급
지자체 수	79개	2개	32개	49개
비 중	97.5%	2.5%	39.5%	60.5%

※ 현재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81개 지자체(시·군)의 화장장려금 및 장사시설 관련 조례 분석 결과

< 관련 사례 >

- 철도 공사로 인해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음. 납골당에 안치하기 위해 시청에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기존 분묘를 개장하는 것은 지원금 예외로 되어 있음을 확인함. 처음부터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처음 화장이든 개장 화장이든 화장을 하는 시민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국민신문고, '15.10월)

(2) 유족(신청자)의 주소지 제한

- 국가·지자체는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화장 및 자연장 장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의무**(「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km²로, 이는 전국의 전체 공원 면적(279km²)보다 크며, 전국 학교용지를 모두 합친 면적(311km²)과 맞먹는 수준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유족의 신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급**

- 유족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거주자의 사망'과 '화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

- 그러나, 일부 지자체(2.5%, 2/81)가 사망자는 물론 유족의 주소까지 '**관내**'로 제한함으로써 부적정한 제한에 대한 민원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화장장려금은 묘지 증가 억제, 국토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의 거주지와 무관하며,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지자체(97.5%, 79/81)가 이를 제한하지 않음

< 관련 사례 >

- 친정 엄마가 ○○시에 사시다 돌아가심.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수원에서 화장을 하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유족(민원인)의 주소지가 ○○시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절당함. '고인'의 화장에 대한 장려금에 유족의 주소를 왜 따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국민신문고, '19.10월)
- 어머님을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후에 화장장 직원 안내에 따라 생전 어머니가 사시던 ○○군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민원인이 ○○군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이러한 행정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음(국민신문고, '18.6월)

(3) 영아·태아 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한

- 영아·태아 등(이하 “영아등”)의 화장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8/81, 9.9%)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대부분(73/81, 90.1%)은 영아등을 화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화장장려금 지급을 제한

※ 영아등 화장의 경우도 화장장려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비용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인 화장과 달리 ‘장려금 지급’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영아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개)

지급대상				지급	미지급	합계
	영아	태아	영아·태아			
지자체수 (%)	2 (2.5%)	4 (4.9%)	2 (2.5%)	8 (9.9%)	73 (90.1%)	81 (100%)

※ 영아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아와 태아의 화장에 대하여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는 지극히 소수(2/81, 2.5%)

- 행정편의적 사유*로 영아등의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 또는 사망일 이전 ‘1년 이상 거주’ 등을 지급요건으로 정함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소가 없거나 거주요건조차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

< 관련 사례 >

- 지난 1월 태어난 아기가 사망하여 ○○공원에서 화장하였음. 화장장려금 얘기를 듣고 신청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우리 아기처럼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을 받으려면 이미 죽은 아이를 출생신고부터 하고 신청하라는 것인지..... 돈 몇 푼 못받아서가 아님. 우리 아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같아 분하고 참을 수 없음(국민신문고, '14.10월)

(1) 장려금 신청기한 규정의 경직성

- 유족이 화장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이내에 화장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각 지자체 ‘화장장려금 관련 조례’)

* 사망(신고)일 또는 화장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지 1년 이내(지자체별 상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일체의 장려금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신청기한 규정 현황>

(단위 : 개)

신청기한 (이내)	30일	60일	90일	180일	1년	미규정	합계
지자체수 (%)	13 (16.0%)	10 (12.3%)	30 (37.0%)	17 (21.0%)	4 (4.9%)	7 (8.6%)	81 (100%)

- 각 지자체 조례가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장기기증 등의 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

< 관련 사례 >

- ○○시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이 ‘사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뇌사자 등의 장기기증이나 연구용 시신 기증**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화장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기증자가 오히려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이런 억울함이 없으려면 장기기증자도 화장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18.9월)

※ 국가·지자체는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 및 추진하여야 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6②)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

(2) 장려금 지급기한의 자의적 운영

- 일부 지자체는 유족이 지켜야 할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은 짧게,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지급기한 규정 현황>

(단위 : 개)

지급기한 (이내)	10일	15일	20일	30일	60일	미규정	합계
지자체수 (%)	17* (21.0%)	9 (11.1%)	24 (29.6%)	9 (11.1%)	1 (1.2%)	21 (25.9%)	81 (100%)

* 지급기한이 10일 이내인 지자체 수(5일 이내 1개, 7일 이내 8개, 10일 이내 8개)

-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함에 따라 불필요한 고충·불만 유발
 - 유족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처리 경과, 지급 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지자체에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지자체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의 일관된 품질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 유발

< 관련 사례 >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후 한 달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전화할 때마다 입금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체하고 있는데, 차라리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유족을 상대로 차일피일 미루는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음(2016.12월, 국민신문고)

IV. 개선방안

1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 개선

(1) '개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 각 지자체 조례 규정 형식(조문 체계)에 맞게 지급 대상에 명시(예시1)하거나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예시2)

⇒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개정(안) 예시(1) : 지급 대상에 명시 >

현 행	개선안
제○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u>사망일 현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 한다.</u> <u><신 설></u>	제○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사망일 현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u> 2. <u>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u>

< 개정(안) 예시(2) :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 >

현 행	개선안
제○조(지급제외)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u>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u>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조(지급제외) ----- ----- ----- 1. ----- ----- 2. <삭 제> 3. ----- -----

(2) 유족(신청자)의 주소지 제한(관내) 규정 폐지

⇒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조(화장장려금 지급대상) ①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② 제1항 각 호의 연고자는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제○조(화장장려금 지급대상) ① ----- ----- ----- 1. ----- ----- ----- ----- 2. ----- ----- ② <삭 제>

(3) '영아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개정(안) 예시(1) : 지급 대상에 명시 >

현 행	개 선 안
제○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신 설>	제○조(지급대상) ----- -----. 1. ----- ----- ----- 2. ----- ----- 3.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개정(안) 예시(2) :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

현 행	개 선 안
제○조(지급제외)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조(지급제외) ----- ----- -----. 1. ----- ----- 2. <삭 제> 3. ----- -----

(1)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규정

-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의 예외사유 규정

⇒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선안
제○조(신청방법) ① 제○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호서식의 화장장 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신청방법) ① ----- ----- ----- -----.
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사 망신고일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② ----- ----- -----.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 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 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 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이 정하는 경우

(2) 장려금 지급기한의 명확화

⇒ 화장장려금 지급 관련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선 안
제○조(지급방법) ①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은 화장장려금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u>통보하고</u>, 별지 제○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지급방법) ① ----- ----- ----- ----- ② <u>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u> ③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u>즉시 통보하고</u>, 별지 제○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화장장려금 지급 기한은 읍·면·동, 시·군의 장려금 지급업무 처리절차 등을 고려하되, 최대한 단기(예 : 10일 이내)로 규정·운영

V.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81개 기초지자체

(’21.3월 현재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 지자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①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제한 규정 개선	(1) ‘개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개정	(해당 49개 지자체) 가평군, 강진군, 경산시 고령군, 고성군(강원), 곡성군, 광주시, 괴산군, 구리시, 군위군, 군포시, 김천시, 김포시, 남동구(인천), 무안군, 보성군, 산청군, 삼척시, 상주시, 성주군, 안성시, 양산시, 양양군, 연천군, 영광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웅진군, 완주군, 의령군, 의왕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평택시, 하남시, 함양군, 화천군, 양평군, 함평군, 구례군, 무주군, 순창군
	(2) 유족(신청자)의 주소지 제한 (관내) 규정 폐지 ⇒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개정	(해당 2개 지자체) 안양시, 영동군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3) '영아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개정	(해당 77개 지자체) 가평군, 강진군, 거제시, 거창군, 경산시, 계룡시, 고령군, 고성군(강원),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과천시, 광주시, 괴산군, 구례군, 구리시, 군위군, 군포시, 김천시, 김포시, 나주시, 남동구(인천), 남양주시, 단양군, 무안군, 무주군, 보령시, 보성군, 보은군, 부천시, 산청군, 삼척시, 상주시, 성주군, 순창군, 신안군, 아산시, 안양시, 양구군, 양산시, 양양군,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영광군, 영덕군, 영동군, 영암군, 영양군, 영월군, 영천시, 옥천군, 웅진군, 완주군, 음성군, 의령군, 의왕시, 이천시,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진안군, 진천군,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평창군, 평택시, 하남시, 하동군, 함양군, 함평군, 합천군, 화천군
② 장려금 신청·지급 관련 절차규정 개선	(1)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 규정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인정 ⇒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개정	(전체 81개 지자체) 가평군, 강진군, 거제시, 거창군, 경산시, 계룡시, 고령군, 고성군(강원),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과천시, 광주시, 괴산군, 구례군, 구리시, 군위군, 군포시,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김천시, 김포시, 나주시, 남동구(인천), 남양주시, 단양군, 무안군, 무주군, 보령시, 보성군, 보은군, 부안군, 부천시, 산청군, 삼척시, 상주시, 서산시, 성주군, 순창군, 신안군, 아산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구군, 양산시, 양양군,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영광군, 영덕군, 영동군, 영암군, 영양군, 영월군, 영천시, 옥천군, 웅진군, 완주군, 음성군, 의령군, 의왕시, 이천시,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진안군, 진천군,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평창군, 평택시, 하남시, 하동군, 함양군, 함평군, 합천군, 화천군
	(2) 장려금 지급기한의 명확화 ⇒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개정	(해당 21개 지자체) 고령군, 고성군(강원), 고흥군, 곡성군, 과천시, 구례군, 군포시, 무주군, 산청군, 안성시, 영암군, 영월군, 완주군, 의왕시, 이천시,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평창군, 함양군, 화천군

□ 조치기한 : 2021.11.

정 본 입 니 다 .

2021. 5. 11.

국 민 권 익 위 원 회



A C R C